#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재허1001 등록무효(디)

원고(재심피고) 1. 주식회사 A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상태, 윤초롱

2. C

피고(재심원고) 1.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은경, 최유진

재심대상판결 특허법원 2021. 7. 15. 선고 2020허5351 판결

변론종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14.

## 주 문

- 1. 피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 1.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7. 17. 2019당20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1)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002659호/ 2018. 10. 29./ 2019. 4. 10.
- 2) 대상 물품: 꼬치떡
- 3) 도면 등: 별지 1 기재 및 영상과 같다.

<sup>1)</sup> 디자인등록 이후 원고 C이 2020. 11. 19.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단독 디자인권자가 되었다.

## 나. 선행디자인들

### 1) 선행디자인 1(갑 제20호증)

2018. 8. 30. 편의점 'G'에서 판매된 '소떡소떡'이라는 명칭의 꼬치떡(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 2) 선행디자인 2(을 제4호증)

2018. 3. 11. H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에 게재된 '소떡소떡' 제품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 다. 사건의 경위

- 1) 피고들은 2019. 6. 25.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측의 J²)이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들이 모인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적어도 J이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라 한다).
-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당2066호로 심리한 후, 2020. 7. 17.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이고 J은 그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 혹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sup>2)</sup>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아버지이다.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디자인 1(선행디자인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하나, ③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선행디자인 2)로부터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이에 원고들은 2020. 8. 5.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특허법원 2020 허5351호)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1. 7. 15. "①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공동창작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모인출원 내지 공동출원 규정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선행디자인 1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며, ③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4)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후10756호),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21.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 5) K은 재심대상판결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2. 6. 20.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2022고약2981호), 그 약식명령이 2022. 7. 20. 확정되었다(을 제27, 28호증).

사실은 K이 2018. 7. 10. 오전 L병원에서 혈액검사 및 외래진료 등을 받아 당일 오전 ㈜M의 N 공장에서 열린 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회의를 주재 및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 대리인의 "증인은 2018. 7. 10. 오전 10시 30분부터 원고 측의 N 공장 사무실에서 가진 개발회의에서 O에서 출시한 종래 소떡꼬치의 문제점 분석 및 이를 개선하기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주심판사의 "증인은 2018. 7. 10. 오전경에 소떡소떡 제품개발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6)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와 함께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이사건 등록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3101호)<sup>3)</sup>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도 피고들은 J이 이 사건등록디자인의 창작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된 것으로서 무효라는취지로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K의 위증 확정판결을참작하더라도,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과정에 어느 정도 가담하였다고 볼 수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법원 2022나2305(본소), 2022나2312(반소)호로 항소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20, 27호증, 을 제4, 27, 28호증의 각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회사

<sup>3)</sup> 이에 대하여 피고들 등은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6894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K의 증언은 K이 이 사건 개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므로, K의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J이 창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창작자임에도 원고들이 공동출원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모인출원이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된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증인 K의 거짓 진술과 관련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K의 거짓 진술이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 3.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함은 그 거짓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짓 진술이 위증으로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취지 참조).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 전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 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 리킨다. 따라서 창작자(공동창작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 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자의 지시로 디자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거나 도면 작성만을 하 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로는 부 족하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관하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와하거 나, 새로운 착상을 단순한 도면화를 넘어서 디자인적으로 구체화하거나, 디자인의 전체 적인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게 한 경우 등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 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디자인등록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취지 참조).

### 나.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내지 18, 25, 3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8, 13 내지 16, 24, 25, 29,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P의 증언, 증인 Q, J의 일부 증언, 원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인정에 반하는 원고 C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증인 J, Q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아니한다.

1) 피고 회사는 2015년경 아래 사진과 같이 떡에 구멍을 내어 햄을 넣은 형태의 '비엔떡', '하꼬호꼬 떡햄바' 등을 제작한 바 있으나, 위 각 제품이 지역적으로 널리판매되지는 아니하였다.



- 2) 소시지와 떡을 교차로 꼬치에 끼운 음식인 속칭 '소떡소떡' 제품(이하 이와 같은 형태의 제품을 '기존 소떡소떡 제품'이라 한다)은 2018. 3. 24.경 유명 방송인 R가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소개하면서 유명해졌다.
- 3) S에서는 2018. 5. 24.경, O 편의점에서 2018. 6. 29.경 각 아래 사진과 같은 기존 소떡소떡 제품 형태의 '소떡소떡' 제품을 출시하였다.



4) M의 직원 T는 2018. 6. 30.경 O 편의점에서 출시한 위 소떡소떡 제품이 '자

연해동 30분 후 조리' 등의 방침으로 인하여 O 편의점 점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취지로 M 내부에 자료를 공유하였고, M의 직원 U은 2018. 7. 4.경 M에 O 편의점의 소떡소떡 제품이 엉망이라는 취지의 사진을 공유하였다.

- 5) 그러나 O 편의점의 소떡소떡 제품은 흥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표이사인 K의지시에 따라 M는 2018. 7. 10. 11:32경 O 편의점의 소떡소떡 제품을 구입하여 직원인원고 C을 포함하여 T, U 및 증인 P 총 4명이 시식해보기에 이르렀다(이하에서는 '이사건 시식회'라 한다).
- 6) 이 사건 시식회 당시 P은 원고 C에게 "O 편의점의 소떡소떡 제품은 떡이랑소시지가 교차로 꽂아져 있어 따로 먹는 경우 맛이 별로 안 느껴지나, 같이 먹었을 때맛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 C이 동의하면서 그 상품성을 높게 평가하면서'구멍 뚫린 떡 안에 소시지가 끼워져 있는 꼬치 상품'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하기도하였다.
- 7) 그 후인 12:00경 원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 회사가기존에 M에 납품하던 도그킹 제품(\*\*\*)과 같이 떡 안에 소시지를 끼운 상품 개발 가부를 묻고, 그 샘플 제작을 요청하였다.

8) 이에 J은 12:26경 원고 C에게 샘플 사진( )을 전송하였는데, 원고 C이 J에게 '위 샘플은 잘못된 것이고, 본인이 요청한 것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

자, J은 원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직원인) Q에게 연락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9) 그 이후 Q와 원고 C은 다음 표와 같이 샘플 사진 및 수정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일시	전송 사진	전송 당사자	증거
2018. 7. 10. 15:10경 (1차 샘플)		Q → 원고 C	을 제7호증
2018. 7. 10.	0.0,	$Q \to$	
17:14경		원고 C	을 제7호증
(2차 샘플)		천포 (	
2018. 7. 11.		$Q \rightarrow$	
18:47경		- 원고 C	을 제7호증
(3차 샘플)			
2018. 7. 17. 15:41경	- 소떡소떡 미니스톱 출시 90% 확정. [개선사항] - 피 309, 259 4일. (분유는 빼고) - 피에 쫄깃함을 주기 위해 타피오카 살짝추가 소시지가 아주 조금 보이게 (다 덮이지 않고) - 색상은 4가지 색상을 무지개떡 형태로 한꼬치에 끼워서 금주중 샘플 받고 싶음.	원고 C → Q	을 제7호증
2018. 7. 19.			
18:41경		$Q \to$	을 제7호증
(4차 샘플)		원고 C	J

10) 원고 C은 위 1차 샘플 사진을 전달받은 이후에 Q에게 '튀어나온 소시지가

타니 떡으로 소시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수정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Q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2차 샘플 사진을 원고 C에게 전송하였다.

- 11) 원고 C은 위 시식과 2차 샘플 사진을 전달받은 다음 날인 2018. 7. 11. 16:26경 K에게 전화로 "어제 소떡소떡을 먹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이에 피고회사에 소시지를 떡으로 감싼 제품을 제조해보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 12) 원고 C은 위 통화 이후 Q에게, "옆에 소시지를 약간만 보이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여, Q가 원고 C에게 위 3차 샘플 사진을 전송하였다.
- 13) 원고 회사의 납품에 의해 편의점 G에서 2018. 10.경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 제품인 아래와 같은 사진의 '소떡소떡' 제품이 출시되었다.



14) 원고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20. 11.경 M를 퇴사하고 피고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다 2021. 8.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K의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도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창작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증인 K의 위증이 없었더라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1) 증인 K에 대하여 위증죄가 인정된 '허위' 진술의 요지는, '증인 K이 이 사건 시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 다.
- 2) 재심대상판결은 K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았다. 즉, "2018. 6. 30.경 O 편의점에서 소떡꼬치가 새로 출시되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데다가, G에서도 유사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2018. 7. 10. 제품 개발회의에서 O 편의점 제품을 실제로 구입해 온 후 디자인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원고 C이 당시 '도그킹' 제품처럼 구멍이 뚫린 떡에 소시지를 끼우고 꼬치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J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디자인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J이 떡 속에 소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기존 제품의 사진을 전송하여 해당 디자인을 다시 설명해 주었고, 그 이후 Q로부터 여러 샘플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 3) 그런데 증인 K은 자신의 지시로 개최된 이 사건 시식회 다음 날인 2018. 7. 11. 직원인 원고 C으로부터 위 증언내용과 같은 이 사건 시식회 요지를 '전화로' 전달받아 알게 된 후 마치 자신이 시식회에 직접 참석한 것처럼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증인 K의 증언 중 K이 증언한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 그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경위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은 갑 제 25호증의 1, 2(각 녹취서, 녹음파일) 등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K의 위 '허위' 진술부분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권리자 출원 등의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증인 K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기존에 소시지를 떡으로 감싼 제품('비엔떡', '하꼬호꼬 떡햄바' 등)을 생산한 사실 이외에는 J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C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시 제품 생산을 의뢰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형태를 지시하며 샘플 제작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이고, J 및 Q는 그 지시에 따라 단순히 그 제품을 직접 제작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J 또는 Q가 디자인의 전체적인 미감에 관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적으로 구체화하거나, 구체적인 디자인적 요소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완성할 수있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혹은 공동 디자인권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이다.

##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C이 2018. 6.경 피고 회사에 기존 소떡소떡 제품 제조·납품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역으로 피고 회사 내부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 제품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C이 그 샘플

제작을 의뢰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피고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 제품이 논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그 내용도 '떡 속에소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 정도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다.
- 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이 소떡소떡 제품을 피고 회사에 제 안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한편, 증인 J 및 Q는,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 제품을 원고 C에게 2018. 6. 셋째 주 즈음 제안하였다고 증언하나, O 편의점에서 기존 소떡소떡 제품이 출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6. 29.이어서 증인 J, Q의 이부분 증언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S에서는 2018. 5. 24.경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피고 회사는 모두 편의점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이 소떡소떡 제품을 인지한 것도 O 편의점에서 판매된 이후인 것으로 보여서 S에서 먼저 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증인 J·Q의 증언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라) 나아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은 떡 속에 소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 제품을 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마. 소결

그렇다면 증인 K의 허위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점은 위증죄에 대한 처벌 단계에서 엄중히고려됨이 마땅함은 별론으로 하고 재심 사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앞서본 바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서 고려할 수는 없다).

##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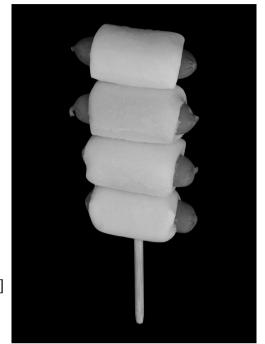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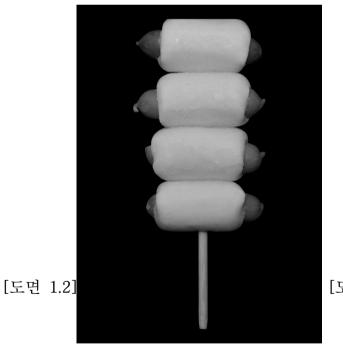
- 1. 재질은 나무, 쌀가루 또는 밀가루, 소시지임.
- 2. 본원 디자인은 내부에 소시지를 넣고 둥글게 말은 형태의 떡을 횡방향으로 중첩 하여 꼬지에 끼워 넣어 독창적인 미감을 형성한 꼬치떡에 관한 것으로, 튀기거나 전자렌지 등으로 데우거나 구워서 먹는 것임.
- 3.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앞면을, [도면 1.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1.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1.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 4. [참고도면 1.1]은 본원 디자인 물품을 튀기거나 구워 소스를 바른 형태의 사용상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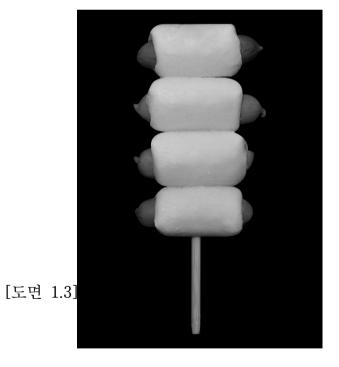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꼬치떡'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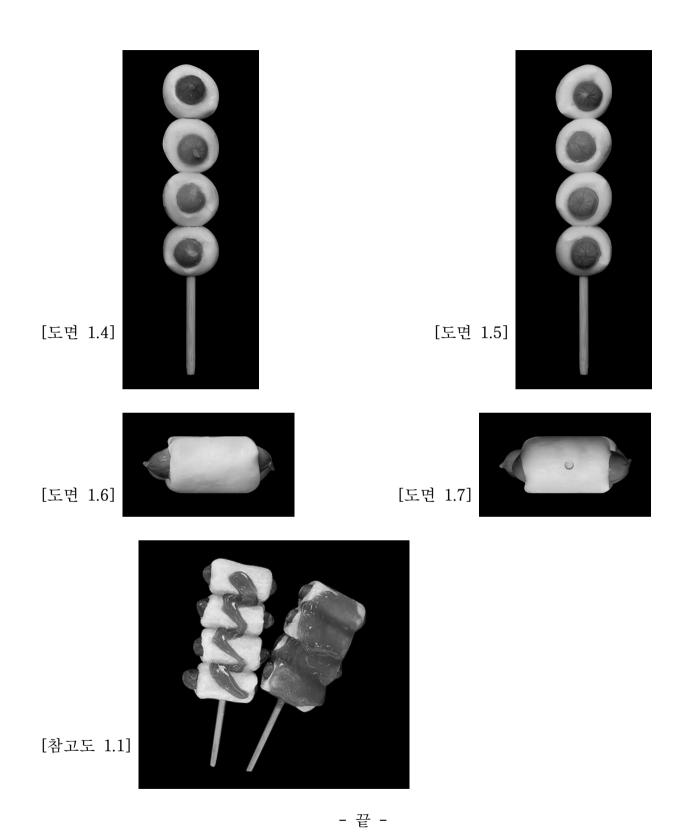


[도면 1.1]





- 18 -



## 별지 2

##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 1. 선행디자인 1



## 2. 선행디자인 2



- 끝 -